

도급사업 안전보건 자체 점검표

1. 도급 현황

수급업체명	인종	도급형태	도급기간	주요 도급업무	근로자 수

* 근로자 수 : 도급중사 근로자 수

2. 자체점검 사항

구분	현황	점검결과		비고
		O	X	
협업체 구성·운영	모든 수급업체(하수급업체포함)를 포함하여 협업체를 구성·운영하고 있는가? 협업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?			
작업장 합동·순회 점검	점검반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는가? 작업장 순회점검은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? 작업장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?			간성면, 산박 및 보도 2주연 (2월에 1회이상)
안전보건 교육지원	안전보건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지도·지원하고 있는가? 교육지원을 위한 장소와 자료를 지원하고 있는가?			
작업환경 측정	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였는가?			
경보 운영사항	발파작업,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 대비 경보운영 체계를 수립·운영하고 있는가? 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경보 내용을 통보받고 숙지하고 있는가?			
안전보건 조치	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(산인법 제29조 제3항)에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했는가? 유해·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·문해,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 시 안전보건장보(허용물질의 유해·위험성, 작업성 주의사항, 안전 보건조치, 긴급조치사항)등을 제공하고 있는가?			
유해·위험 정보제공	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범용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(지시) 하였는가?			

* 점검결과에 체크하여 주세요.

지역별 문의처 :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(지도원)

기관명	기관별 주소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우한양행빌딩 14층	02-828-1633
서울북부지도원	서울시 중구 칠패길 42(봉래동 1가) 우리빌딩 7층	02-3783-8311
강원지도원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(은의동)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	033-815-1011
강원동부지도원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청 15층	033-820-2530
부산지역본부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)	051-5200-523
울산지도원	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146(달동, 국민은행빌딩 2.4층)	052-226-0522
경남지도원	경남 창원시 의창동 중앙대로 259(용호동)	055-269-0564
경남동부지도원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	055-371-7521
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8, 9, 11층	062-949-8742
전북지도원	전북 전주시 덕진구 간선로 25(인후동)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	063-240-8533
전북서부지도원	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2층	063-240-8585
전남동부지도원	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061-689-4954
전남서부지도원	전남 무안군 삼함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	061-288-8703
제주지도원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 2동)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	064-797-7512

기관명	기관별 주소	전화번호
중부지역본부	인천시 서구 한빛로 15 (가정동 491)	032-5707-251
경기남부지도원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10층, 13층(이의동,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)	031-259-7125
경기북부지도원	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	031-828-1917
경기서부지도원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역로 230(고잔동) 2층	031-4817-512
경기동부지도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(금곡동) 소곡회관 2층	031-785-3312
부천지도원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(상당) 대신프라자 3층	032-6806-514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, 20층	053-609-0523
대구서부지도원	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	053-650-6833
경북동부지도원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054-271-2033
경북북부지도원	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(임수동)	054-478-8011
대전지역본부	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)	042-620-5611
충북지도원	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(가경동) KT빌딩 3층	043-230-7129
충남지도원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(불당동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	041-570-3443

도급사업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!



도급사업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

중요성

▶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하던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, 추락, 질식, 화재·폭발 등 중대재해와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.

※ 사고사례

- OO산업 : 대정비 작업 시 위험물질의 퍼지(배출)상태를 도급인이 완전하게 확인하지 않고 화기작업을 지시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
- OO제철 : 제철공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전로내 대화벽돌 축조작업 중 노내에 유입된 불활성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수급인 근로자 5명이 사망

도급작업의 종류

▶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작업

* 사무실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, 개조, 수리, 정비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내협력업체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6항의 적용대상)에 해당됨

** 부정기작업, 정기(긴 주기)적으로 실시하는 설비의 개조·수리·청소·검사 등의 작업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의무 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.

협의체 구성·운영

수급인 사업주와 안전·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.

▶ 모든 수급업체(하수급업체포함)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.

• 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방법, 작업의 시작시간, 작업간의 연락방법,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, 도급인인 사업주와 관련 수급인 간 연락 및 조정방법, 관련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및 조정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.

▶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

작업장 합동·순회점검

작업장 합동·순회점검을 해야 합니다.

▶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합니다.

※ 건설업, 제조업, 토사석 광업, 서적·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,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(이외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)

▶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,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
※ 건설업, 선박 및 보트건설업 : 2개월에 1회 이상

안전·보건 교육 지원

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·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.

▶ 도급인은 교육지원체계를 세우고 지도·지원해야 합니다.

▶ 도급인은 교육지원을 위한 장소·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작업환경 측정

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합니다.

▶ 도급인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합니다.

▶ 작업환경측정 시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입회시켜야 합니다.

▶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경보 운영사항

발파작업,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를 대비한 경보 운영과 수급인·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.

안전·보건 조치

다음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·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.

- 토사·구축물·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
- 기계·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
-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
-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 하거나 해체하는 장소
-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
-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
-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
- 도급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
- 화재·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
 - 가.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 - 나.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 화학설비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 - 다.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·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-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
-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
-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
-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
-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·해체·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
-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
-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



안전·보건 정보제공

안전·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▶ 유해·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, 분해,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(물질의 유해·위험성, 작업상 주의사항, 도급인이 마련한 안전보건조치, 유출 등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사항)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시정조치(지시)

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,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(시정지시)를 하여야 합니다.

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